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4. 5.(화) 석간	배포 일시	2022. 4. 5.(화) 10:00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보험기획과	책임자	과 장 엄대섭 (044-202-7347)
		담당자	서기관 이영기 (044-202-7352) 사무관 천춘희 (044-202-7359)

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(4.5.~5.16.)

– IT소프트웨어 · 프리랜서 등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
– 고용장려금 신청기간, 지원대상 정비 등 제도개선
–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
–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는 4월 5일 **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**(이하 "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")**」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**하고,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.

□ 이번 개정안은 **▲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, 특고)**에 대한 **고용보험 추가 적용**방안을 포함, **▲고용장려금 제도개선**, **▲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**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
□ 이번에 입법예고한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〈1〉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 고용보험 적용 관련

1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('22.7.1. 시행)

❶ **(추가 직종) 특고 5개 직종***을 **고용보험 적용** 대상 직종으로 추가

* 정보기술(IT) 소프트웨어 프리랜서, 화물차주(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품목운송차주), 골프장 캐디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기사

-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**실태조사** 및 **노·사 및 전문가**가 참여한 **고용보험제도개선TF** 논의와 **고용보험위원회 의결**(3.4.) 등을 거쳐 마련 (고보법시행령 개정)

❷ **(보험료 산정방식)** 추가되는 5개 직종의 **고용보험료**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**월 보수액으로 산정**하되,

- 소득확정이 어려운 **화물차주(택배 지·간선기사, 특정품목운송차주), 골프장 캐디**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(6월 고시 예정) **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** (징수법시행령 개정)

2 특고,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

○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**정당한 이직사유**는 **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**되어 있어, **특고·예술인의 특성**에 맞춰 **별도로 규정** (고보법시행규칙 개정)

* 예)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→ 계약기간의 만료나,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

〈2〉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

1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

○ 고용장려금제도는 **신청기간**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**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**

- 신청기간에 대한 **재위임근거가 불명확**하거나, **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**에 대하여 **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** 함
(고보법시행령·규칙 개정)

* 지역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사업

2 지원 대상 정비

○ **지역고용촉진지원금*·고용촉진장려금****의 지원 제외 대상을 **"4촌 이내 혈족"**에서 **"직계 존·비속"**으로 조정

*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·신설·증설한 사업주 지원

** 장애인·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

○ 또한, **고용촉진장려금**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**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**한 경우, **지원대상으로 포함**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도모 (고보법시행규칙 개정)

3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

○ 고용장려금사업 중 **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***에 대하여 **지원 업종**을 정할 근거 규정 마련 (고보법시행령 개정)

* 고용유지지원금, 지역고용촉진지원금, 고용촉진장려금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※ 예) 공공성이 있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은 제외

〈3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

○ 그간 **자영업자 고용보험**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, **사업자등록**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,

-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**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**하는 경우* (6월중 고시 예정)는 **고용보험에 가입**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(징수법시행령 개정)

* 예) 고유번호증 등

〈4〉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

❶ **구직급여를 신청**하는 **일용근로자**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**「근로내용 확인신고서」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**토록 정비

→ **일용근로자**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**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** (고보법시행규칙 개정)

❷ **건설도급 특례**에 따라 **건설업 중 6개 업종***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**하수급인**이 하고 있음

* 건설사업자, 주택건설사업자, 전기공사업자, 정보통신공사업자, 소방시설업자, 문화재수리업자(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제2항 각호)

→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**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**하도록 하여 확인절차에 의한 **행정처리 지연 등 개선** (고보법시행규칙 개정)

❸ **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**

→ **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**(22.1월 시행)에 따라 **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*** **판단**을 위한 **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, 대학·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**
(징수법시행령 개정)

*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(건설업 외) 또는 총 공사금액 60억원이상 사업(건설업)

□ **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**은 "이번 개정안은 **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**으로 **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**하는 방안을 중심으로,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."라면서,

○ "**이해관계자 및 국민**께서도 **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**될 수 있도록 **입법예고 기간**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."고 밝혔다.

□ 입법예고안은 **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** 또는 **대한민국 전자관보(www.mois.go.kr)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보험기획과	책임자	과 장	엄대섭 (044-202-7347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기 (044-202-7352)
			사무관	천춘희 (044-202-7359)
	고용서비스정책관실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	책임자	과 장	이도경 (044-202-7919)
		담당자	사무관	배혜영 (044-202-7909)
	코로나19 대응	책임자	과 장	박병기 (044-202-7292)
	고용회복지원반	담당자	사무관	조병돈 (044-202-7305)
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오태웅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학 (044-202-88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